시민들 "느긋한 저녁" 행복…식당가 "모처럼 숨통" 활기

광주 영업시간 제한 완화 첫날 표정

단체 손님 늘어 매출 도움 기대
샤워 가능 운동시설 이용 늘어
"3차 가본 게 얼마 만이냐"
상무지구 등 늦은 밤까지 북적
택시·대리운전 잡기도 수월해져

"10명까지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고 12시까지 문을 열게 된 게 얼마 만인 줄 모르겠네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인원 제한도 완화된 18일, 상무지구와 동구 구시청 사거리 일대에서 만난 지역 식당과 카페 주인들은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의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지역 식당과 주점, 카페의 운영시간은 오는 31일까지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연장됐고, 사적 모임 인원도 최대 10명까지 늘어났다. 집합·행사도 백신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결혼식은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약 3개월 만에 매장 영업이 자정까지 허용되면서 쌀쌀해진 날씨에도 유흥가인 상무지구 일대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밤 10시만 되면 떠밀리듯 가게 밖으로 나섰던 손님들이 밤 11시가 넘도록 일행들과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지키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한 직장인은 인근 맥주전문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일행들에게 "3차를 가본 게 얼마만이냐"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또 다른 회사원은 "10시에 맞춰서 택시 잡느라 고생할 필요 없이 모처럼 친구들과 천천히 술 한 잔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상무지구 내 한 맥주전문점 운영자는 "영업 시간이 두 시간 늘어나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제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어 한결 숨통이 트일 것이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광주시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와 구시청 주점가에도 자정이 되도록 자리를 지킨 손님들이 눈에 띄었다.

구시청의 한 고깃집 주인은 "10시 넘어서도 문을 열게 돼 손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은 그리 손님이 많지 않았다"면서 "월요일이고 첫날이라 손님이 많지 않지만 주말에는 12시까지 꽉 차있을 것"이라며 웃는 얼굴로 말했다.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사적모임 인원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면서 낮 시간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다.

19일 낮 광주시 광산구 평동 식당가는 점심시간에 맞춰 찾은 인근 산업단지의 단체 손님들로 가득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밤 12시로 완화된 첫날인 지난 19일 밤 11시께 광주시 동구 구시청 일대 주점에는 연장된 시간에 술을 마시는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 애호박찌개 전문점에는 같은 유니폼을 입은 8~9명의 직원들이 한데 모여 눈치보지 않고 점심식사를 즐겼다.

식당·카페 영업 종료시간인 밤 10시에 맞춰 고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빚어졌던 '택시잡기 전쟁'도 사라졌다. 상무지구 일대에는 불이 켜진 빈 택시들이 손님을 찾아 돌아다녔다. 웃돈을 줘도 쉽게 찾지 못했던 대리운전도 한결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손님들로 북적이던 식당 앞 벤치에 앉아있던 한 대리기사는 "어제만 해도 원하는 '콜'을 골라 잡았는데, 오늘은 집 방향으로 가는 '콜' 잡기도 힘들다"고 했다. 완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체육시설 내 샤워장 운영도 가능해지면서 헬스장을 찾는 시민들도 많아졌다.

박현우(31)씨는 "지금까지는 운동을 하고 땀에 젖은 채 집까지 갔는데 샤워장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운동하는 횟수를 늘릴 생각"이라며 "운동 뒤 바로 씻을 수 있는 게 좋다는 것을 새삼 알았다"고 말했다.

결혼식장 하객도 50명 가까이 늘어났다는 소식에 한 예비부부는 "코로나로 결혼식장을 찾는 하객들도 적고 인원도 제한되면서 하객 한 명이 아쉬운데 방역수칙 완화로 더 많은 분들 축복 속에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 현장실습 사망' 재발 방지 목소리 잇따라

시민단체·전교조 등 성명
요트업체 대표 영장 신청

여수 요트업체 현장실습 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고(故) 홍정운(18)군 사고 〈광주일보 10월 11일 6면〉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각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19일 "죽음의 현장실습제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는 성명을 내고 홍 군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공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면서 "교육부가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골몰해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을 후퇴시킨 교육부가 자초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일한 죽음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산업체파견형 현장실습제도'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사고현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군 추모와 현장실습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고가 나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하겠다고 하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이 저조하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체 현장실습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더이상 전화를 걸어 조사하거나, 학교로 공문을 내려보내 일주일 안에 엑셀표를 채워 제출하라는 '겉핥기'식 실태조사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현장을 돌며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게 이들 요구다.

'현장실습폐지·직업계고 정상화 추진위원회'도 20일 여수를 찾아 홍군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 해경은 19일 요트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현장실습 324개 사업장 긴급 안전점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문제 발견 땐 실습 중단, 학교 복귀"

요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잠수작업 중 숨진 여수특성화고 홍정운 학생 사건과 관련,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직업계고 정상화와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위한 입장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실습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 홍정운 학생의 명복을 빈다"며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리 감독의 주체인 교육감으로서, 꽃다운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현재 우리 학생들이 실습 중인 324 개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실사를 진행,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실습을 중단시키고 학생들을 학교로 복귀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점검을 마친 103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위험요소를 살피며 관리하고, 추가로 실시 예정인 지역 내 전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은 다음달 6일까지 전면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상과 같은 노력이 반드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교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더욱 귀담아들으며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잘못 인정해 놓고 피해자에 책임 떠넘기나"

재판장, 도색 작업 추락 사망 관련 현장 책임자에 일침

"조금 전까지 혐의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사망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느냐"(판사)

19일 광주지법 404호 형사 법정에서 진행된 A(60)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지켜보던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면서 표정이 굳어졌다.

A씨는 지난 4월 9일 나주시 빛가람동 B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 책임자로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일반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듯 했던 재판은 재판부 허락을 받아 이뤄진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이후부터 분위기가 급변했다.

A씨는 변호사 질문에 따라 "안전교육을 매일 했다", "교육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화를 신고 작업하고 구명줄 등을 (준비)하라는 내용", "피해자의 안전 사고 전에도 교육을 했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안전교육을 참석하지 않았고 자신은 안전교육 중 사고 소식을 접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신문 내용의 경우 '자신은 할 일을 했는데 피해자가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뉘앙스였다. 이 때문인지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뒤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한 게 맞느냐", "조금 전 (공소사실을) 인정해놓고 이건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피고인 신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안전교육을 했는데 돌아가신 피해자가 안전교육을 참석하지 않고 현장에 일하러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얘기가 끝났다"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A씨는 판사의 강한 목소리에 당황스러운 듯 "현장 책임자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월을, 해당 회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
■ 건 물 : 411 ㎡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